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44
----------	------

제출일자 : 2023.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따라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7조(문화도시센터 기능), 제18조(위탁운영)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제2항(수탁기관의 선정)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수의계약)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마.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3.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3. 3. ~ 2026. 2.(3년)

다. 수탁기관 : (재)달성문화재단

라. 선정방법 : 수의계약

마. 조직 및 운영인력 : 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 11명

구 분	계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인 원	11	1	2	8	

바. 위탁대상 사무 :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문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위탁시설 현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소재지		구분	면적(m²)	
화원읍 천내리	454-4	토지 (대지)	6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화원권역)
		건물	185.78	
현풍읍 원교리	93-5	토지 (대지)	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현풍권역)
	93-7	토지 (대지)	457	
		건물	58.5	

아. 소요예산 : 90억 원(국 45, 시 13.5, 군 31.5)(3년간)

※ 2023년 사업비 : 30억 원(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정률보조)

※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총괄표 : 따로 붙임

4. 향후 추진일정

가. 市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2.

나.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2월 중

다. 국비 신청 및 교부 : 2023. 2월 말

※ 시비 및 군비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라. 위탁운영 시행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2023. 3월 ~

5. 상위 및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참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총괄표

구분	단위사업		세부프로그램	합계	예산액				
					'23	'24	'25	'26	'27
문화도시 조성사업	합 계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도시 참여구조 마련			2,550	590	490	490	490	490
	도시특화	Imagine-달성2000	SW 시민그룹지원	475	95	95	95	95	95
			SW 예술가그룹지원	475	95	95	95	95	95
			SW 문화달성비전2037수립	50	50	-	-	-	-
		크리에이터달성in	SW 달성문화기획학교 운영	750	150	150	150	150	150
			SW 달성문화마을운동회 개최	250	50	50	50	50	50
	권역기획	(현풍권역) 도농문화융합사업	SW 문화농활체험	150	30	30	30	30	30
			SW 문화마을활성화	250	50	50	50	50	50
			SW 일상이문화	100	20	20	20	20	20
	기반구축	달성문화시민 참여예산제선진화	SW 모바일기반 스마트플랫폼 구축	50	50	-	-	-	-
			SW 주민참여예산제 문화도시분과 신설(비예산)	-	-	-	-	-	-
	다양한 문화가치의 교류와 통합의 장 마련			2,550	510	510	510	510	510
	도시특화	달성 문화다양성사업	SW 문화한끼	500	100	100	100	100	100
			SW 달성보따리	100	20	20	20	20	20
			SW 달성살기	400	80	80	80	80	80
		달성문화 포커스	SW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동 다큐제작	500	100	100	100	100	100
			SW 들락날락 팟캐스트운영	250	50	50	50	50	50
	권역기획	(가창권역) 문화매개자사업	SW 문화휴게소	250	50	50	50	50	50
			SW 예술가의 아틀리에	150	30	30	30	30	30
			SW 일상이문화	100	20	20	20	20	20
	기반구축	매거진 들락날락 문화달성 문화달성미래포럼	SW 온라인 매거진 발간	140	28	28	28	28	28
			SW 오프라인 매거진 발간	60	12	12	12	12	12
			SW 문화도시달성 미래를 위한 언택트 국제 회의	100	20	20	20	20	20
	지역자원에 기반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산			4,750	750	1,000	1,000	1,000	1,000
	도시특화	달성 문화나루터 조성사업	HWV 달성문화나루복원사업	1,000	100	100	350	100	350
			SW 금호강선유문화제육성	250	50	50	50	50	50
			SW 시민참여형 야외오페라'사문진'제작	750	50	300	50	300	50
	권역기획	(회원권역) 예술+관광활성화사업	SW 문화오일장	250	50	50	50	50	50
			SW 문화스토리스트	150	30	30	30	30	30
			SW 일상이문화	100	20	20	20	20	20
	기반구축	달성 문화원형 발굴사업	SW 달성문화원형연구 및 수집사업	500	100	100	100	100	100
			SW 달성문화원형 온·오프라인 아카이빙	250	50	50	50	50	50
			SW 종로탐사대운영	250	50	50	50	50	50
			SW 한강로드탐방프로그램	250	50	50	50	50	50
	연계사업	100대피아노콘서트 지역연계강화	SW 100명의 피아니스트 문화소외지역 파견	500	100	100	100	100	100
		달성대구현대미술제 지역연계강화	SW 달천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및 지역사업 참여	500	100	100	100	100	100
	지역문화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5,150	1,150	1,000	1,000	1,000	1,000
	도시특화	달성문화도시 창의기금조성사업	SW 달성문화도시창의기금조성(비예산)	-	-	-	-	-	-
			SW 달성문화도시메세나협의회발족	100	20	20	20	20	20
		달성문화도시 플랫폼들락날락조성사업	SW 달성문화도시플랫폼 '들락날락조성기본계획수립	150	150	-	-	-	-
			SW 도시문화캠프개최	750	150	150	150	150	150
			SW 권역별 커뮤니티공간운영	200	40	40	40	40	40
	권역기획	(다사권역) 가족문화교육사업	SW 다사로운클래스	250	50	50	50	50	50
			SW 다사로운 마을라디오	150	30	30	30	30	30
			SW 일상이문화	100	20	20	20	20	20
	기반구축	시민문화읍·면장제시행 문화도시 경영조직구축	SW 시민이 뽑은달성문화 읍·면장제 시행	450	90	90	90	90	90
			SW 달성문화군수선포(비예산)	-	-	-	-	-	-
			SW 달성문화도시경영조직구축사업	3,000	600	600	600	600	60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독립된 운영 규정과 재무·회계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2-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5-1.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